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월간 뉴스레터

2017년 12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세무정보

-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안내
-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적용될 개정세법
- 2017년도 주요 세법개정 정 부안 주요 수정내용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개요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7.12.20(수) 제22차 회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의 개정사항(주1)을 반영하여 마련한 회계감사기준(주2)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주1)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외부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에 대응하여 국제감사기준 개정('15.1월)

(주2)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개정시 공인회계사회(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회계감사기준 전문과 34개의 회계감사기준서로 구성.

핵심감사제(KAM) 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2. 주요내용

가. 핵심감사제(KAM)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

◦ (주요내용)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주1)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주1) (예) 수주산업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영업권 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등

◦ (기대효과) 감사보고서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 증대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나.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 (주요내용) 현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을 'OO회계법인 대표이사 000'로 기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담당이사는 000입니다'라는 문구가 별도로 추가됨

- 다만,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harm's way exemption)

◦ (기대효과) 감사보고서 실명제로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상장사 계속기업가
정의 적절성에 대
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다. 상장사 계속기업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공시내용 평가 강화
 ◦ (주요내용)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

-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도(close call(주1)),

(주1) 사전적으로 ‘간신히 사고 등을 면하는 아슬아슬한 구사일생(九死一生)의 상황’을 의미

- 회사는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KAM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 (기대효과)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사건 발생시, 그 사건이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
서 체계 개편**

라.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를 변경

◦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하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을 강조사항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재하고, 경영진(지배기구 추가) 및 감사인 책임단락을 끝부분에 기재
 ◦ 감사인은 독립성 유지 등 관련 윤리기준을 준수하였음과 감사인의 감사책임과 한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신 · 구 비교 >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견 ▪ 감사의견근거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기타사항)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업무담당이사 이름

* ()괄호는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며, 강조사항과 기타사항 문단의 위치는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시행일
3. 시행일

2018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 다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close call)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코넥스 제외)의 '18년 감사보고서('19년 작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하고,

<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 시행시기 >

상장사 규모	도입시기	비 고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감사보고서 ('19년 작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자산 1천억원 이상	2019년 감사보고서	상근감사 의무설치
전체 상장사	2020년 감사보고서	-

◦ '16.6월부터 수주산업에 우선 도입(주1)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감사기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주1) 「수주산업 감사시 특별 고려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4. 종합적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존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적정, 한정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되는 감사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 향후에는 핵심감사사항과 관련 감사절차, 업무담당이사명, 회사에 발생한 중요 사건과 이에 대한 평가 등 감사과정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특히, 감사인은 회사 내부감사기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감사절차에 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외부감사의 충실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중간결과요약

가. 중간결과 요약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17.9.28) 이후 「회계개혁 TF」를 운영 중 → 현재까지 핵심감사제 등 3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1. 핵심감사제(KAM : Key Audit Matters) 전면 도입

-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
-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 강화

2.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표준감사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
-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제도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3.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

- 회계담당자(임원, 부서장 등)의 성명, 경력, 교육실적 등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각 협회에 중소형사 및 신규상장사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추진

향후 논의방향

나. 주요과제 향후 논의방향

1.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회사 수요에 탄력적 대응,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 확보

※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

- 감사인 지정 시 회사에 특정 감사인군(例 : 4대 회계법인) 지정 신청권 허용
- 감사보수 협상이 어려운 경우 등 감사인 재지정 신청사유 확대
- 자산규모가 큰 회사를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 선정 시 후순위 배치 등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내부감사기구의 참여 확대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 제정(공인회계사회),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개정(상장협), 공인

회계사회 등의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지원 등

3. 감사인 등록제 도입

-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
「회계감사인력 양성방안」,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아울러, 회계법인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법규 마련

세무자문 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대출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자동차구입금액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존의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청’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자료제공자가 모바일 토크스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자료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됨.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의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함).

- 모바일 홈택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요
내
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18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직접 판단하여 필요한 각종 영수증 자료를 홈택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될 개정세법

2017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법 §55 ①)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2016년		2017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8,800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1억 5천만 원 ~ 5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법 §59 의 2)

<개정이유> 출산·입양 지원 확대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 출생·입양 신고한 거주자 ○ 세액공제액: 1 명당 30 만 원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input type="checkbox"/>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 시 공제 확대 - 첫째 출산·입양 시 30 만 원 - 둘째 출산·입양 시 50 만 원 - 셋째 이상 출산·입양 시 70 만 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이후 출산·입양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 의 4②)

<개정이유> 난임시술 지원 확대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근로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3% ○ 공제 한도: 700 만 원 * 본인과 65 세 이상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15%	<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별도 지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18 의 6)

<개정이유>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초.중.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공제율: 교육비의 15% * 학생 1 명당 연 300 만 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체험학습비 *추가 (학생 1 명당 연 30 만 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 의 2)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30% ○ 공제 한도: 300 만 원	<input type="checkbox"/> 적용시기 연장 및 한도 조정 ○ (좌 동)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30% 대중교통 . 전통시장: 40%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천만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 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 천만 원 ~ 1.2 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 만 원 ('18.1.1.이후 250 만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 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 만 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 한도	7 천만 원 이하	300 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 천만 원 ~ 1.2 억 원	300 만 원 ('18.1.1.이후 250 만 원)	1.2 억 원 초과	200 만 원
총급여액	공제 한도								
7 천만 원 이하	300 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 천만 원 ~ 1.2 억 원	300 만 원 ('18.1.1.이후 250 만 원)								
1.2 억 원 초과	200 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적용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용역 구입액 -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물품과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1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적용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 '18.12.31.
---	---

<적용시기>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은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법 §59 의 4)

<개정이유> 근로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2016 년	2017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 시 세액공제(15%) 적용 < 추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 제외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법 §18 의 2)

<개정이유> 해외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2016 년	2017 년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 (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 . 공제 .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 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좌 동) * 매월분 원천징수 시 19% 세율 적용
---	---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령 §95)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

2016년	2017년
<p><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공제 한도: 750만 원 	<p><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조특법 §30)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 감면율: 70%(150 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 년간 적용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조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 조의 3)와 동일하게 적용 ○ 좌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 년간 적용

<적용시기>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령 §38)

<개정이유> 상장법인과 의 형평성 감안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input type="checkbox"/>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좌동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법 §59 조의 3 ①)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한도 : 400 만원 ○ 공제율 : 15%(5,500 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 천만원 초과자 12%)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공제한도 : 400 만원 (단, 총급여 1,2 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 억원 초과자 300 만원) ○ 좌동

<적용시기>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 의 3 ①)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 300 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 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적용시기>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가산세부담 완화(소법 §81)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2016 년	2017 년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액의 2%(지연제출 시 1%)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인하 ○ 지급액의 1%(지연제출 시 0.5%)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017년도 주요 세법개정 정부안 주요 수정내용

□ 2017.12.1(금), 2017.12.2(토) 및 2017.12.5(월)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7.12.19(화)에 공포되었습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중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기법 §28③)

< 수정이유 >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 분납기간 ○ 징수 유예기간 ○ 체납처분 유예기간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 (좌 동)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실도 분석 시 고려요소 명문화(국기법 §81의 6②)

< 수정이유 >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회계성실도 자료 추가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 검증 필요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성실도 분석시 고려요소 추가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2. 조세특례제한법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 수정이유 >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세액공제율 축소 <input type="checkbox"/> (당기분) 1~3%* → 0~2%**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input type="checkbox"/> (증가분) 30%	<input type="checkbox"/>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증가분) 2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 수정이유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30% → 30~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 R&D비용/매출액) X 3} ○ (대·중견기업) 20~30%* * 20% + 최대10%{(신성장·원천 R&D비용/매출액) X 3} <신 설>	<input type="checkbox"/>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 비용/매출액) X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의2)

< 수정이유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조특법 §29의7)

< 수정이유 >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정 부 안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고용증대세제 신설</p> <p>○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단위: 만원)</th> <th>중소</th> <th>중견</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50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등</td> <td>1,000</td> <td>700</td> <td>300</td> </tr> </tbody> </table> <p>○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p> <p>*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p> <p>○ (적용기한) '20.12.31.</p>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5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700	300	<p><input type="checkbox"/>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금액 조정</p> <p>○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단위: 만원)</th> <th colspan="2">중소</th> <th rowspan="2">중견</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등</td> <td>1,000</td> <td>1,100</td> <td>700</td> <td>300</td> </tr> </tbody> </table> <p>○ (좌 동)</p> <p>○ (좌 동)</p>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상시근로자	700	5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700	300																											
(단위: 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radio"/>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input type="radio"/> (감면율) 50% <input type="radio"/>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input type="radio"/>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input type="radio"/>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input type="radio"/> (좌동) <input type="radio"/> (좌동)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조특법 §30의2)

< 수정이유 > 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input type="radio"/> (적용요건)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input type="radio"/> (공제금액) 전환인원 X 1인당 일정 금액 - 중소기업 : 700→1,000만원 - 중견기업 : 500만원 <input type="radio"/> (고용유지기간) 1년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18.12.31.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지원 강화 <input type="radio"/> (좌 동) - (좌 동) - 중견기업 : 500→700만원 <input type="radio"/> (고용유지기간) 2년 <input type="radio"/> (좌 동)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4)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input type="radio"/> (대상)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input type="radio"/> (대상 근로자)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input type="radio"/> (공제금액)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 X 50%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18.12.3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조특법 §91의18)

< 수정이유 >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 <input type="radio"/>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200만원 → 300만원 - (서민형) 250만원 → 5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500만원 <input type="radio"/>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조정 <input type="radio"/>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금액* 조정 * 초과분 9% 분리과세 - (일반형) 현행 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input type="radio"/> (좌 동)

중산·서민층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 수정이유 >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input type="radio"/>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 천만원이하인 자 포함 <input type="radio"/> (공제 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input type="radio"/> (공제율) 10% → 12% <input type="radio"/>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공제율 차등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이 하*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input type="radio"/> (좌 동)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조특법 §107의2)

< 수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 30일 이하 숙박용역 ○ (적용기한)'18.1.1.~'18.12.31. (1년간)
--	---

3. 부가가치세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등)

< 수정이유 >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의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납세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발급 제한	<input type="checkbox"/> 현행 발급체계를 유지하되, 발급사유 추가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 허용
<input type="checkbox"/>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신설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의 경정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1% 부과	<삭 제>

4. 소득세법

-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세법 §94①)

< 수정이유 > K-OTC 활성화 지원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

<input type="checkbox"/>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상장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하는 주식 <input type="checkbox"/> 비상장법인의 주식 <신 설>	<input type="checkbox"/> K-OTC* 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비상장법인의 주식 -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세법 §104①, 부칙 §1 3호)

< 수정이유 > 중소기업 대주주는 '16년 세율이 인상(10%→20%)된 점 감안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input type="checkbox"/>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18.1.1. 이후 양도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시행시기) 중소기업:'19.1.1. 이후 양도분 중소기업 외:'18.1.1. 이후 양도분

5. 법인세법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세법 §13)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현행) 사업연도 소득의 80% <input type="radio"/> ('18귀속) 60% → ('19귀속) 5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조정 <input type="radio"/> ('18귀속) 70% → ('19귀속) 60%

-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 §24)

< 수정이유 >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 감안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input type="radio"/> (대상)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설립된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행규칙에 지정하는 기관* *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 60개 기관(17.10월말 기준) <input type="radio"/> (내용) '18.1.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존에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input type="radio"/>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18~'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법인세법 §44의3, §46의3, , §47)

< 수정이유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 ①사업목적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input type="checkbox"/>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input type="checkbox"/>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input type="checkbox"/>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좌 동) <input type="checkbox"/> 고용승계 사후관리를 개별 근로자 유지에서 근로자 수 유지로 완화 <input type="checkbox"/>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 80% 미만인 경우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수 80% 유지로 완화
---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조정(법인세법 §55①)

< 수정이유 >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최고세율 구간 신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과표</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0~2억원</td> <td>10%</td> </tr> <tr> <td>2~200억원</td> <td>20%</td> </tr> <tr> <td>200~2,000억원</td> <td>22%</td> </tr> <tr> <td>2,000억원 초과</td> <td>25%</td> </tr> </tbody> </table>	과표	세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25%	<input type="checkbox"/> 최고세율 구간 조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과표</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0~2억원</td> <td>10%</td> </tr> <tr> <td>2~200억원</td> <td>20%</td> </tr> <tr> <td>200~3,000억원</td> <td>22%</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5%</td> </tr> </tbody> </table>	과표	세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표	세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25%																				
과표	세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현행 유지(법인세법 §57의2①)

< 수정이유 > 해외간접투자 지원

정 부 안	수 정 안

<p>□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인하</p> <p>○ 펀드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장이 펀드에 환급</p> <p style="padding-left: 20px;">- 한도 : 국외원천소득의 14%→ 10%</p> <p>○ 펀드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14%)</p>	<p>- 현행 한도(14%) 유지</p>
---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후 그 조직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과세 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세제-17315, 2017.11.29.)

-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5.6.16. 94누11019판결 등)할 것이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임.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方便일 뿐이고,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님. 또한 이러한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목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규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목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2.9. 2010두6731)할 것인바,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도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종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에 대한 서면통보 없이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조사청의 부과처분 및 해당 과세자료를 토대로 한 관할청의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3349, 2017.11.1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는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임에도 조사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3.1.1.~2015.12.31.로 하는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조사대상기간 이외 기간에 대하여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그와 같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임(조심2016중3708, 2017.8.24.). 또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심사청구에, 조사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여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나,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결국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7.24. 선고2011두14227판결),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301, 2017.11.30.)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자회사가 실시하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 지분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5%의, 지분이 25%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각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단일세율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의 정도에 따라 차등세율로 정하고 있는 것은, 원천지국, 즉 중국의 경제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국 내의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한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약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과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에 의한 10% 세율과의 차액에 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천지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여 이익을 준 기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과세권만 양보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으로 그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참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로 서울행법2015구합80123, 2016.08.11)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